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370
----------	-----

2024. 11. 26.
경제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5. 30. 김광심 의원 대표발의(9명 발의)

나. 상정의결

- 제319회 강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2024. 6. 11.)
“ 심사보류 ”
- 제323회 강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2024. 11. 26.)
“ 원안가결 ”

2. 제안이유(제안설명 : 대표발의자 김광심 의원)

- 최근 맨발걷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맨발걷기를 위한 맨발길 조성에 대한 요구가 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구민이 일상 생활에서 안전하고 쾌적하게 맨발걷기를 할 수 있도록 공원 등에 맨발길과 세족 시설 등관련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안 제2조 및 제3조)

나. 맨발걷기 활성화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맨발길 조성 권장에 관한 사항(안 제5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해당 없음.
- 나. 예산조치 : 논의 필요
- 다. 입법예고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전문위원 : 이문성)

1 조례안의 개요 및 배경

가. 조례안의 개요

- 본 조례안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통한 주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맨발길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최근의 예를 보면 2023년 4월 4일자 언론보도된 경기도 안산 시의 사례가 있는 바,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맨발걷기는 흙을 밟는 과정에서 지압효 과와 함께 심신안정,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면역력도 높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고 소개하면서 안산시 관내 10개소에 황톳길과 흙길을 조성하며 오는 2025년까지 20개소를 추가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음.
- 안산시는 맨발걷기를 통해 신체 활력을 증진하고 삶의 활기를 더할 수 있다는 기대를 밝히고 있는 바, 이에 따라 최근 맨발걷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 제정안은 7개의 본칙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로 관련 시책의 수립·추진 등을 명시하고, 도시공원 정비 및 조성시에 보행로·산책로 등에 30퍼센트 이상을

맨발길로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추진 사업 근거를 마련하고(안 제4조),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6조), 공동주택 내 공 원이나 어린이놀이터 등에 맨발길 조성을 권장하고(안 제6조), 맨발걷기 활성화에 기여 한 개인 또는 단체에 표창할 수 있는 사항(안 제7조)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나. 조례안 배경

-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5(건강도시의 조성 등)이 2021년 12월 21일 신설되어 2023년 12월 22일자로 시행될 예정에 있음.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5(건강도시의 조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건강을 실현하도록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도시의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개선하는 도시(이하 “건강도시”라 한다)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건강도시를 구현할 수 있도록 건강도시지표를 작성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건강도시지표의 작성 및 보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건강’을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건강도시”를 “도시의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상호 협력하여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는 도시”라고 정의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 중인 건강도시사업은 크게 건강도시 인프라 확충, 건강증진 프로그램, 건강한 생활터 만들기 등으로 구분할 수 있고, 세부적으로는 지역사회진단을 위한 보건통계조사, 자전거도로

및 수변공원 조성, 금연·운동 등 건강생활실천 프 로그램, 건강한 학 교·직장만들기 등의 사업이 있음.

- 주민의 건강증진 발전을 위해서는 개인의 생활습관을 변화시키는 것 을 넘어 도시환경 전반의 여건을 개선시킬 필요가 있고, 지역사회 환 경 조성, 사회적 지지 및 자발적인 동기형성 등 새로운 접근방법의 도 입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건강도시 관련 사 항을 법제화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건강도시 관련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취지로 「국민건강증진법」이 위와 같이 개정되었 다고 사료됨.
- 앞으로 건강도시와 관련하여 건강도시 지표 설정 및 건강영향 평가 등이 시행될 것으 로 보이는 바, 금번 조례안은 주민의 건강을 증진 하고 이를 위한 맨발길 조성을 통해 도시의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개선하고자 하는 선제적 취지를 담 고 있다는 점 에서 그 의미가 상당하다고 사료됨.

2 주요 사항 검토

가. 총칙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맨발걷기”란 포장(鋪裝)하지 않은 흙길에서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맨발길”이란 산책로, 탐방로, 등산로 등 그 명칭에 상관없이 맨발걷기에 적합한 흙길을 말한다.

- 본 조례안은 총칙규정에서 목적(안 제1조)과 용어정의(안 제2조)를 명 시하여 맨발걷기 활성화를 통한 주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 는 취지를 밝히고 있음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안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맨발걷기 기회 확대 및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맨발걷기에 편한 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도시공원의 정비 및 조성 시 보행로·산책로 등에 30퍼센트 이상을 맨발 길로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안 제3조는 맨발걷기에 편한 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구청장으로 하여금 수립·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주의적 규정을 두고 있으며, 시책 추진을 담보하기 위해 도시공원의 정비 및 조성시 보행로·산책로 등에 30퍼센트 이상을 맨발길로 조성해야 한다는 권고적 성격의 규정을 마련하였음.

다.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안 제4조)

안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맨발길·세족시설 등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조성·확충 및 정비 사업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길 홍보 사업
그 밖에 맨발길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안 제4조는 맨발걷기를 위한 시설을 확보하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일련의 사업을 예시하고 있음

라. 업무의 위탁(안 제5조)

안 제5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안 제5조는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민간 위탁 근거 규정인 바, 맨발걷기 운동 방식 및 주의 사항 등에 관한 전문성 및 노하우 등을 갖춘 민간 주체가 운영할 수 있는 방식이 직영방식보다는 타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됨.

마. 맨발길 조성 권장(안 제6조)

제6조(맨발길 조성 권장) 구청장은 구민의 맨발길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내 공원이나 어린이놀이터 등에 맨발길 조성을 권장할 수 있다.

- 안 제6조는 공동주택내 공원이나 어린이놀이터 등에 맨발길 조성을 구청장으로 하여 금 권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주거지역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맨발길에서 맨발걷기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라고 보여짐.

바. 표창(안 제7조)

제7조(표창)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서울특별시 강남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조례안은 맨발걷기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관련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맨발걷기 참여를 유도하고 확대하기 위한 취지라고 사료됨.

6. 질의 및 답변 요지

- 제319회 강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2024. 6. 11.)
 - 질의과정 중, 제정 조례안에 대한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 및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므로 심사보류하자는 동의안이 제출되어 심사보류됨
- 제323회 강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2024. 11. 26)
: “생략”

7. 토론 요지 :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사항 : “없음”

붙임 서울특별시 강남구 맨발길 조성 및 맨발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맨발길 조성 및 맨발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김광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70
----------	-----

발의연월일: 2024. 5. 30.

발 의 자: 김광심·이성수·황영각·

노애자·이동호·박다미·

이도희·이향숙·김진경 의원

(이상9인)

1. 제안이유

최근 맨발걷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맨발걷기를 위한 맨발길 조성에 대한 요구가 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구민이 일상 생활에서 안전하고 쾌적하게 맨발걷기를 할 수 있도록 공원 등에 맨발길과 세족시설 등관련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안 제2조 및 제3조)

나. 맨발걷기 활성화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맨발길 조성 권장에 관한 사항(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 논의 필요

다. 입법예고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맨발길 조성 및 맨발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길 조성 및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길 조성을 통한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포장(鋪裝)되지 않은 흙길에서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길”이란 산책로, 탐방로, 등산로 등 그 명칭에 상관없이 다음 각 목의 장소에 맨발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된 흙길을 말한다.
 -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 나.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을 위해 맨발걷기 활성화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도시공원의 정비 및 조성 시 보행로·산책로 등에 맨발길도 함께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맨발걷기 사업)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

진할 수 있다.

1. 맨발길 조성·확충 및 정비 사업
2. 맨발길 유지·보수 사업
3. 맨발길 활성화에 필요한 시설물(세족장, 안내표지판 등) 설치 및 보수
4.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길 홍보 사업
5. 그 밖에 맨발길 조성 및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맨발길 조성 권장) 구청장은 구민의 맨발길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내 공원이나 어린이놀이터 등에 맨발길 조성을 권장할 수 있다.

제6조(표창)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서울특별시 강남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